

의안번호	제 514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포상추천을 위한 작성서식 개정
  - 공적조서 양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 부분을 생년월일 작성으로 개정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# 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#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공 적 조 서

(1)성 명		(한 자)		
(2)생년월일		(3)군번 (군인의 경우)		
(4)성 별		(5)국적 (외국인의 경우)		
(6)주 소				
(7)직 업		(8)소 속		
(9)직 급		(10)직 위	(11)대외직명	
(12)근무기간		(13)공적분야		
(14)공적요지(50자 내외)				
(15) 추천훈격		(16) 추천순위		
조 사 자				
(17)소 속		(18)직 위		
(19)직 급		(20)성 명	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
			년 월 일	
추 천 관			(인)	

주요 학력 및 경력

(21) 년 월 일	(22) 이 력	(23) 년 월 일	(24) 이 력

과거 표창기록 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(25) 년 월 일	(26) 내 용	(27) 년 월 일	(28) 내 용

(29) 공 적 사 항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